Z - 30 - 2022

제조업 등의 정비보수절차에 관한 지침

2022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- 제·개정 경과
  - 2022년 12월 리스크관리분야 표준제정위원회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 - 안전보건공단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, 2013
  - KOSHA GUIDE P-154-2016 "정비·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"
  - KOSHA GUIDE O-4-2011 " 화학공장의 정비·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"
  - KOSHA GUIDE O-3-2011 "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"
  - Plant Maintenance HSE Manual, Broken Hill Solar Plant, 2016
  - KS B ISO 8927 "토공기계-기계가용성-용어"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 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2년 12월 3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 제조업 등의 정비보수절차에 관한 지침

## 1. 목 적

디지털 기반 신기술과 특수화학 설비의 제조업 투입이 확산되고 있으며,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서 정비나 보수의 많은 부분이 전문 협력업체에 의존되고 있다. 이 지침은 제조업종의 기계·설비 등의 정비·보수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 및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정비·보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행·유지함으로써 사업장 생산성을 유지하고 정비·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업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를 담당하는 관리자에 적용할 수 있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3.1 정비: "정비"라 함은 기계·설비 등의 고장을 예방하거나 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. 정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.
- 3.1.1 고장 또는 결함 검출 목적의 시험 및 점검 또는 안전 규정에 명시된 법적 점검 작업의 실시
- 3.1.2 윤활, 세척 및 조정 등의 작업을 실시
- 3.1.3 결함이 있는 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수리 작업
- 3.1.4 소모성 장치를 교환하기 위한 작업
- 3.2 정비·보수계획서: "정비·보수계획서"란 공장에 설치된 기계·설비 등의 정비·보수작

Z - 30 - 2022

업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체 작업일정, 작업내용별 관리사항, 에너지 관리계획, 도급업체의 관리, 작업허가, 재가동 전 점검계획, 안전보건 교육 등의 전반적 인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문서 작성으로 정의된다.

- 3.3 화학설비: 화합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반응시키는데 사용되는 설비로 혼합, 분리, 저장, 계량, 열교환, 성형, 가공, 분체취급, 압축, 이송 등에 필요한 장치, 기계, 기구 및 이에 부속하는 장치로 정의된다.
- 3.4 도급업체: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계약 및 발주 등 수급업체에게 주요업무의 수행과정을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한 업체로 정의된다.
- 3.4.1 "상주도급업체"란 "정상운전기간 중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업체"를 말한다.
- 3.4.2 "외주도급업체(공사업체)"란 "보수작업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모든 외부업체"를 말한다.
- 3.5 수급업체: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외에서 도급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 업무로서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, 하도급 및 협력업 체로 정의된다.
- 3.6 밀폐공간: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의된다.
- 3.7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정비·보수 개념

- 4.1 정비/보수 작업 종류
- 4.1.1 정기보수 작업(Turn Around)

#### Z - 30 - 2022

- (1) 주로 4~6년 단위로 단위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하는 작업이다.
- (2) 대 정비, 또는 Overhaul 등으로 불린다.
- (3) 단시간에 동시다발적인 여러 작업이 진행되고 다수의 외부 근로자가 참 여하여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다.

#### 4.1.2 일반 정비보수 작업

- (1) 특정 공정 및 설비를 정비/보수하기 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정비하는 작업이다.
- (2) 개조.보수 및 정비 등으로 불린다.
- (3) 인접 공정이 운전중인 경우가 많아 위험물의 누출에 의한 화재,폭발 및 누출 위험이 있다.

#### 4.1.3 긴급 정비보수 작업

- (1) 공정 및 설비의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으로 긴급하게 정비/보수하는 작업이다.
- (2) 짧은 시간에 해당 설비 등을 정비해야 하므로 작업 전 유해/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대형사고 발생이 된다.

## 4.2 정비/보수 절차( 그림-1 참조)

#### 4.2.1 정비·보수 계획서 수립

- (1) 사업주는 정비·보수작업 시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·보수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토록 한다.
- (2) 정비·보수 부서에서 정비·보수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·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.

### (가) 설비의 고장 가능성

- (나) 설비의 현재상태
- (다) 설비의 운전조건 및 정격
- (라) 설비고장 및 검사이력
- (마) 설비의 정비 또는 폐기 여부
- (바) 생산손실을 야기하는 고장과 수리기간
- (사) 생산과 운전계획
- (아) 고가의 설비

정비 ·보수 계획서 수립

공장 상황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계획서 수립

1

작업 위험성 평가

작업별 위험성을 도출하고 제거 및 관리대책 수립

1

정비·보수 절차서 작성

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



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 전 점검

안전작업허가서 관리 대상 선정 및 관련 작업 전 점검실시

1

정비·보수 작업 전 교육

정비책임자에 의해 관련 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후 기록 유지

1

정비·보수 작업 수행

<그림 1> 정비·보수 작업 절차

#### Z - 30 - 2022

- (3) 정비·보수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(가) 정비·보수작업 일정 계획
  - (나) 중대재해처벌 시행령을 참조한 안전관리조직(원청업체 및 도급업체)
  - (다) 공장, 공정 또는 설비의 에너지 차단 및 격리 계획
  - (라) 작업 위험성 평가계획
  - (마) 도급업체 관리계획
  - (바) 안전교육 계획
  - (사)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
  - (아) 재가동 전 점검계획
  - (자) 비계 및 중장비 등의 사전점검계획
  - (차) 간이시설(휴게실, 화장실, 흡연장 등) 설치 및 유지계획
  - (카) 그 외 정비·보수작업에 필요한 사항

## 4.2.2 작업 위험성 평가

- (1) 정비·보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원청업체가 주관하여야 하며, 정비·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도급업체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을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.
- (2) 작업 위험성평가는 아래와 같은 기법 등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(가) KOSHA GUIDE P-140 "작업안전분석(Job safety analysis)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"
- (나) KOSHA GUIDE X-38 "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기술지침"

### Z - 30 - 2022

- (다) KOSHA GUIDE P-83 "사고예상질문분석(WHAT-IF)기법에 관한 기술지침"
- (라) KOSHA GUIDE X-47 "사고예상질문/체크리스트분석 결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"
- (마) 기타 해당 작업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기법 등
- (3) 작업 위험성평가는 단위작업 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정비·보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해당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5)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허가서 승인 요청 시에는 해당 작업의 진행단계별 작업내용과 단계별 위험 성및 예방대책을 분석한 결과(예, JSA 결과)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 위험성평가 기법중 작업 안전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, 일반적으로 작업 안전 분석(JSA)을 수행대상 작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.
- (가) 유해·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, 유해·위험 요인이 절차서 또는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, 점검되지 않는 작업
- (나) 절차서, 지침서 또는 작업 프로그램에서 ISA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작업
- (8) JSA 수행 필요성을 평가할 때, 아래의 각 항목에서 하나라도 "그렇다"라고 파악 되면 JSA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.
- (가) 해당 작업에 대해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가?
- (나) 해당 작업에 대한 작성된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?
- (다) 유해·위험요인들이 작업허가서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고 점검되지 못하는가?
- (라) 원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이와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는가?

- (마) 해당 작업이 위험하거나, 복잡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필수훈련을 포함하는가?
- (바)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차서 또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장비 또는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가?
- (사)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가?
- (9) 일반적으로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별로 작업 안전분석 수행 대상을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예는 <표 1>과 같다. 다만, 이 표의 내용은 수행되는 작업위치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<표 1> 작업 안전분석 수행 대상 참조(예)

연번	작업허가 종류	JSA 대상작업	비고
1	밀폐공간 출입작업	모든 작업	
2	화기작업	위험지역에서의 작업	허가서로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
3	고소작업	안전대 사용 작업	비계 등이 적절하게
		고소작업 차량 이용 작업	설치된 경우 제외
4	굴착작업	깊이 1m 이상 굴착	굴착허가 대상은 30 cm 이상
5	중량물 취급작업	중장비 사용 작업	
		체인불록 등 사용	
6	상온(일반)작업	용기내 청소	독성 및 인화성물질 취급용기
		맨홀 개방	
		맹판 설치 및 제거작업	
7	전기작업	활선 및 활선근접 작업	

연번	작업허가 종류	JSA 대상작업	비고
			허가서로 위험을
		정전작업	제거할 수 있는 경우
			제외
8	방사선작업	모든 작업	

(10)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절차서 또는 지침서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위험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서(지침서) 또는 작업허가서로 작업 위험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.

#### 4.2.3 정비·보수 절차서의 작성

- (1) 정비·보수 계획서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정비작업 절차서를 작성하여 야 하며,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.
- (가) 정비작업준비 (유자격자, 기자재 및 공구)
- (나) 정비착수 전 안전조치 사항과 확인사항
- (다) 정비작업 절차
- (라) 정비완료 후 점검에 대한 사항
- (마) 정비완료 후 안전조치 사항과 확인사항
- (바) 정비 및 보수에 대한 교육
- (사) 정비 결과보고
- (아) 정비작업 중 비상시 응급조치사항
- (자) 작업자간의 통신연락 사항

## Z - 30 - 2022

## 4.2.4 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 전 점검

- (1) 화기작업과 같은 특수한 작업의 경우 별도의 작업허가서와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.
- (가) 화기작업허가서
- (나) 상온(일반)작업허가서
- (다) 제한공간 출입허가서
- (라) 전기차단허가서
- (마) 굴착작업허가서
- (바) 방사능 사용허가서
- (사) 권양작업(JACK-UP) 절차서
- (아) 용접작업절차서
- (자) 열처리작업절차서
- (차) 비파괴검사절차서
- (2) 작업허가서의 작성요령
- (가) 작업허가서 발급자는 허가서 발행에 앞서, 당해 작업의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.
- (나)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 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 서명을 받는다.

#### Z - 30 - 2022

- (다) 작업자는 작업허가서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작업 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인수 서명한다.
- (라) 작업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허가 시간, 수행 작업 개요,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,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(마) 작업허가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내용의 변경,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.
- (바)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에 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 시 확인 서명한다.
- (사) 허가서는 적색과 황색 및 녹색 3부를 작성하며 적색 허가서 사본은 안전관리부 서를 통하여 작업현장에 게시하고, 황색 허가서 원본은 발급자가 보관하고, 녹 색의 사본은 해당 작업 수행 담당부서에 발급하다.
- (3) 안전작업허가서의 승인 및 확인
- (가) 작업허가서의 승인은 작업 지역 운전부서의 책임자가 승인하며 안전관리부서 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공동으로 승인한다
- (나) 작업의 위험정도, 크기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확인한다.
- (다) 작업부서의 책임자는 작업허가 상의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.
- (4) 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와 작업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여 야 한다.

### Z - 30 - 2022

- (가) 수행작업이 제한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
- (나) 수행작업에 안전상 전기차단이 필요한지의 여부
- (다) 수행작업이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의 여부
- (라) 점검 또는 정비결과, 검사시 방사능 사용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지의 여부
- (마)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 가능성
- (바)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방법
- (사) 에너지 차단 및 방출 방법
- (아)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 (내부포켓 또는 드레인 등) 상 유해·위험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및 환기장치 설치 필요성 여부
- (자) 소화 장비의 배치계획
- (차) 출입제한 구역 계획 및 작업 중 현장 입회자 배치 여부
- (카) 안전 보호 장구의 비치 여부
- (타) 작업수행 전 정비작업원에 대한 공정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

## 4.2.5 정비·보수 작업 전 교육

- (1) 교육은 정비책임자에 의해 관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범위: 수행할 작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작업 범위가 변경시에는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을 수행한다.
- (3) 작업자 책임: 각 작업자의 책임과 예상되는 기타 업무에 대해서 논의한다.

#### Z - 30 - 2022

- (4) 유해·위험요인 확인과 관리: 작업 중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어떤 단계로 관리해야 하며, 적절한 관리방법 및 안전장치에 관하여 논의한다.
- (5) 유해·위험요인 검토: 위험성 평가에 의해 확인된 유해·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단계에 대한 이해를 한다.
- (6) 개인용 보호구 및 안전관리 매뉴얼 요구사항: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과 작업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 및 수칙을 확인한다.
- (7) 추가 작업 전 교육 및 작업중단 조건 검토: 추가적인 작업에 대한 교육 또는 작업 중단이 요구되는 상황과 시기에 대하여 논의한다. 여기에는 작업자 중 신규 또는 작업 변경자가 있거나 작업자 본인이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도 해당된다.
- (8) 비상시의 응급조치: 비상상황 시 연락처 및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.

#### 4.2.6 작업 수행

- (1) 정비/보수 작업을 수행한다.
- (2) 협력업체와의 공동 작업일 경우 "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"을 활용한다.

Z - 30 - 2022

# 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2. 12. 29.

○ 개정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
○ 개정사유 : 가이드라인 고도화

○ 주요 개정내용

- 1. 목적 변경

- 2. 적용범위 변경

- 3. 용어의 정의 추가

- '4. 정비·보수 절차', '5. 정비·보수 계획서 수립', '6. 작업 위험성 평가', '7. 정비·보수 절차서 작성', '8. 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 전 점검', '9. 정비·보수 작업 전 교육'의 내용을 '4. 정비·보수 개념' 내용으로 통합하여 변경